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901
------	------

2024.06.26.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4.6.26.) 상정·의결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이해우)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두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하나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기금 심의 등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바, 조례를 계정별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외협력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대외협력기금 국내·국제협력계정 분리로 인한 기금 명칭 변경

- (기존)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변경) 국제개발협력기금

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신규 조례 신설로 인해 기존 대외협력기금  
조례에서 국내협력계정 내용 삭제

- 목적(안 제1조)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의 범위(안 제2조) :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범위 삭제, 외국지방정부의 범위 → 정의 변경
- 기금의 용도(안 제6조) : 국내협력계정의 용도 삭제
- 기금관리(안 제7조) :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삭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국내협력계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라.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관 분임기금  
운용관 변경

- 기금관리(안 제7조) : 기금운용관(경제정책실장 → 글로벌도시정책관)  
변경 및 분임기금운용관(국제협력과장 → 국제협력담당관) 변경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구분

-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소관국장을 명시

바. 국내·국제협력계정 조례 분리로 인한 ‘계정별’ 문구 삭제  
(안 제5조~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4. 11. ~ 5. 1.) 결과: 의견있음(일부반영)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대외협력기금이 ‘국내협력계정’ 과 ‘국제협력계정’ 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례로 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협력계정을 ‘국제개발협력기금’ 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기 위해 제출됨.

#### 나. 대외협력기금 이원화 배경 및 각 계정별 운용 현황

- 서울시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함(2005.12.29.).
- 이후 국내 타 지자체와의 상호교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례 개정(2007.10.01.)을 통해 당초 국제협력기금의 명칭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그 아래 국제협력계정과 국내협력계정을 각각 두게 됨(2008.01.01.).
- 당시 동일 기금을 국내와 국제계정으로 운영 이원화한 것은 대외 기관과의 협력증진이라는 설치 목적의 유사성은 있으나, 사업 대상이 국내 타 지자체와 외국지방정부로 차이가 있었으므로 국제협력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각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을 신설하게 된 것임.

- 그리고 동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과 재해 구호경비 등의 용도로 운용되고<sup>1)</sup>,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등을 위한 용도로 운용되고 있음<sup>2)</sup>.
- 현재 ‘국내계정’의 총 조성 규모는 28억 1천 1백만원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을 비롯한 5개 고유목적사업에 약 20억 5천 8백만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5월 현재 24.5%가 집행됨.

### < 2024년 국내협력계정 사업집행 현황 >

(2024.5.31.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2,058	504	24.5
1.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300	210	70.0
2.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	100	10.0
3.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250	175	70.0
4. 랜선 나눔 캠퍼스	473	10	2.1
5.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35	9	25.7

- 또한 ‘국제계정’의 총 조성액은 69억 8천 7백만원으로,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운영,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등 10개 고유사업에 48억 1천 7백만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5월 현재까지 16.9%가 집행됨.

1) 서울시 조직개편(2022년 8월)에 따라 국제협력계정 담당부서인 국제협력과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경제정책실로 이관됨.

2) 서울시 행정국 대외협력과 소관

## < 2024년 국제협력계정 사업집행 현황 >

(2024.5.31.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4,817	815	16.91
1.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959	239	24.92
2.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507	12	2.36
3.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77	0	0
4.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시정책 최고위과정	265	145	54.71
5.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600	0	0
6.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255	242	94.9
7.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249	174	69.87
8. 서울형 ODA 챌린지 추진	1,500	0	0
9.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400	0	0
10. 기금관리비	5	3	60

###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국내협력계정’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을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 변경하면서 조례명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안 제1조~제12조).
  
- 동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조례 중 국제협력계정 관련 사항을 발취하여 재정비하는 등 계정 분리에 목적이 있는 만큼 내용상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7조는 새로 적용되는 서울시 조직개편(2024.7.1.시행예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관을 현행 경제정책실장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으로 변경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국제협력과장에서 ‘국제협력담당관’ 으로 변경하였음.
- 또한 안 제11조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일정 및 안건을 통보하는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이는 현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을 준용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1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두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하나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기금 심의 등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바, 조례를 계정별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외협력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나. 대외협력기금 국내·국제협력계정 분리로 인한 기금 명칭 변경

- (기존)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변경) 국제개발협력기금

### 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신규 조례 신설로 인해 기존 대외협력기금 조례에서 국내협력계정 내용 삭제

- 목적(안 제1조)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의 범위(안 제2조) :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범위 삭제, 외국지방정부의 범위 → 정의 변경

- 기금의 용도(안 제6조) : 국내협력계정의 용도 삭제
  - 기금관리(안 제7조) :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삭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 라.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변경
- 기금관리(안 제7조) : 기금운용관(경제정책실장 → 글로벌도시정책관)  
변경 및 분임기금운용관(국제협력과장 → 국제협력담당관) 변경
-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구분
-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소관국장을 명시
- 바. 국내·국제협력계정 조례 분리로 인한 '계정별' 문구 삭제(안 제5조~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4. 11. ~ 5. 1.) 결과: 의견있음(일부반영)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국제개발협력추진반) 노지훈  
(☎ 2133-5278)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글로벌도시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국제협력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나.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 운용관이 맡는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국제개발협력추진반) 노지훈(☎ 2133-5278)